

제421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9. 5. ~ 9. 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421회 임시회

(2025. 9. 5. ~ 9. 17.)

# 제421회 임시회 개회사

개회사에 앞서 불별더위 속에 도민들의 안녕을 살피느라 분주하셨을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때 암울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발행 이후 4주간

전북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8.9%가 증가해

전국 평균 6.4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기 성과에 그쳐선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전북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 실증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1조 원 규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았고

협업지능 피지컬 AI(Physical AI) 전략 PoC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증 거점이자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나아가는 기반입니다.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용도지구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법 제98조에 따른 도지사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큼니다.

주민 편의와 자치분권 성과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특례가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기본입니다.

교육에서의 청렴은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청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전북교육의 혁신입니다.

단순한 관리와 제도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교육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이 이뤄질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 또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의 존엄과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행복 또한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학생들이 최상의,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질문이 진행됩니다.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 사안은 신속히 보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후속 진행 상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민생 회복, 취약계층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경안이 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구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이 최우선입니다.  
언제나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 목 차

## 제421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7
2. 회기 및 운영 .....	7
3. 의 사 일 정 .....	8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15
2. 처 리 현 황 .....	16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87
2. 처 리 현 황 .....	87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88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89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89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90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90

# I.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8. 29.(금)
- 집회 일자 : 2025. 9. 5.(금)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9. 5. ~ 9. 17.(13일간, 2025년 : 77일, 총누계 411일)

### ○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연 누계 : 19, 총 누계 89)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방	교	육	특	별
제421회 임사회	16	1	4	3	2	3	1			2
2025 년도	111	6	20	22	17	22	15			9
총 누 계	218	13	40	40	35	40	33			17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질문 · 일괄답변(4명)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60%;">① 문화안전소방위원회</td> <td>김 정 기 의원</td> </tr> <tr> <td>② 교육위원회</td> <td>이 병 철 의원</td> </tr> <tr> <td>③ 농업복지환경위원회</td> <td>황 영 석 의원</td> </tr> <tr> <td>④ 기획행정위원회</td> <td>김 명 지 의원</td> </tr> </table> </li> <li>◦ 보충질문 · 답변</li> </ul> <p>2. 본회의 휴회의 건</p>	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정 기 의원	② 교육위원회	이 병 철 의원	③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석 의원	④ 기획행정위원회	김 명 지 의원	
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정 기 의원									
② 교육위원회	이 병 철 의원									
③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석 의원									
④ 기획행정위원회	김 명 지 의원									
9. 17.(수) 10:00	<p>《 제4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태창 의원, 김정수 의원, 이병도 의원, 박정규 의원, 윤영숙 의원, 김명지 의원, 오현숙 의원, 김대중 의원, 김희수 의원, 윤정훈 의원</li> </ul> </li> <li>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li>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li> <li>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0.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1.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12.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1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li> <li>1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li> <li>1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8.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20.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li> <li>21.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li> <li>22.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23.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li> </ul>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4.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49.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50.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5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52.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5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5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55.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결과보고의 건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 5.(금)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li> <li>○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li> <li>○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li> <li>○ 방위산업 기업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퍼지컬 AI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ul>	
기획행정 위원회	9.8.(월) 본회의 종류 직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전주) 현지 확인</li> </ul>	
	9.10.(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li> </ul> </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예산심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li>○ 2025년도 하반기 국제협력진흥원 업무보고 청취(대외국제소통국 예산심사 후)</li> <li>○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ul> </li> <li>○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li>○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li>○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li>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11.(목) 10:00	3	○ 2025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9.16.(화) 14:00	4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9. 5.(금) 15:30	1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9.10.(수) 10:00	2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 환경산림국 소관 - 계수조정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 심사(환경산림국 추경 심사 후) -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9.11.(목) 10:00	3	○ 현지의정활동 - 보건환경연구원, 옥정호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9.10.(수) 10:00	1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11.(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ul> </li> <li>○ 새만금해양수산물 소관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li> </ul> </li> <li>○ 계수조정 및 의결</li> <li>○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li> </ul>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9. 5.(금)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실·국 간담회 및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ul> </li> <li>○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li> <li>○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 건</li> </ul>	
	9.10.(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li> </ul> </li> </ul>	
	9.11.(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안전실</li> <li>- 계수조정</li> </ul> </li> </ul>	
교 육 위 원 회	9.10.(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li> <li>-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li> </ul>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전주교육지원청, 전주학생교육문화관</li> </ul>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12.(금)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li> <li>- 제안자 : 행정부지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li> <li>-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li> </ul>	
	9.15.(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li> <li>-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li>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업, 농업기술원</li> <li>○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등</li> <li>○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21회 (2025. 9. 17.기준)

구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금회	68	38	20	17	1	0	0	3	2	23	2	
	누계	1644	826	404	412	10	7	0	374	61	283	93	
의회	소계	금회	58	33	20	13					23	2	
		누계	1030	649	380	263	6	7	0	5	0	283	86
	의원	금회	56	32	20	12					23	1	
		누계	985	633	377	251	5	0	0	0	280	72	
	위원회	금회	2	1		1							1
		누계	45	16	3	12	1	7	0	5	0	3	14
도지사	금회	5	2		2				1	2			
	누계	463	108	15	93	0	0	0	325	26	0	4	
교육감	금회	5	3		2	1			2				
	누계	151	69	9	56	4	0	0	44	35	0	3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421회 (2025. 9. 17.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8	65	61	4	0	0	0	0	3	
	누계	1644	1627	1485	91	0	25	0	25	22	
조 례 안	소계	금회	38	36	32	4					2
		누계	826	817	743	49	0	6	0	17	11
	의회	금회	33	31	27	4					2
		누계	649	641	589	37	0	0	0	13	10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108	108	93	8	0	3	0	4	0
	교육감	금회	3	3	3						
		누계	69	68	61	4	0	3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3	3	3							
	누계	373	372	322	25	0	18	0	7	1	
예산결산안	금회	2	2	2							
	누계	62	62	47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23	22	22						1	
	누계	283	277	274	2	0	0	0	1	10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93	92	92	0	0	1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48	37	0	0	3	2	6	0	45	41	4	0	0	0	1
	누 계	1281	815	0	0	366	61	30	9	1265	1117	93	25	22	0	21
의회운영 위 원 회	금 회	5						5		4	4					
	누 계	49	20	0	0	0	0	29	0	41	35	4	0	0	0	7
기획행정 위 원 회	금 회	8	7			1				8	8					
	누 계	242	181	0	0	60	0	0	1	240	223	10	0	6	0	4
농업복지 경 환 위 원 회	금 회	11	10					1		10	10					
	누 계	231	176	0	0	54	0	1	0	230	213	2	3	11	0	1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 회	6	6							6	5	1				
	누 계	304	141	0	0	160	0	0	3	304	261	23	15	3	0	2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 회	4	4							4	4					
	누 계	162	112	0	0	50	0	0	0	160	147	8	3	2	0	2
교 육 위 원 회	금 회	12	10			2				11	8	3				1
	누 계	230	185	0	0	42	0	0	3	227	193	29	3	0	0	5
특 별 위 원 회	금 회	2					2			2	2					
	누 계	63	0	0	0	0	61	0	2	63	45	17	1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0	1				17	2	20	20					
	누계	368	16	7	0	5	0	250	87	368	366	0	1	1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5	36			3	2	22	2	65	61	4			
	누계	1571	791	8	0	347	61	271	93	1589	1477	93	14	5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8. 1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3호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사 휴직’ 용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나. 국내·외 시찰의 지원 대상을 모범·성과우수·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효행공무원 및 효행공무원의 가족으로 개정(안 제6조제2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8조 단일 항에 대한 항 번호 정비
- 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규칙 제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제14조 삭제
- 마. 제14조 삭제에 따른 조문번호 정비

##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8. 1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4호

□ 제안이유

- 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표준운영 규정 반영을 통한 규정 명확화 및 선수 인권보호 증진

□ 주요내용

- 가. 자격기준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규정 및 입단계약 체결 전 신원조회 내용 삭제(안 제4조)
- 나. 경기부 단원의 결격사유 항목 및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다. 지도자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 명시, 선수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안 제6조)
- 라. 입영대상자 해약 규정 삭제 등 직권면직 규정 정비(안 제7조)
- 마. 복지포인트 지급 내용 신설(안 제9조)업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8. 2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중 뇌병변 및 루게릭 환자 등을 위한 현실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의사표현의 방법인 의사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규정 (안 제6조)
-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8.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책무 및 지원대상 등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안 제6조)
-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8.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6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법률과 의료, 심리상담 등 외국인 유학생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나 언어적 문제로 진입 장벽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과 이용 방법 교육을 통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신장과 사회 적응을 유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법률·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8.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7호	

□ 제안이유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사업 명시(안 제4조)
- 라.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명시(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8. 2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8호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요건 규정(안 제23조)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7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자치도의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한국학미래진흥원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 등(안 제1조~4조)
- 나.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0호

□ 제안이유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반침하 발생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내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다.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라.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 마.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찬성의원 17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7호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5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능)의 심  
의·의결에 관한 주요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로 규정한  
상위법과 동일하여 조례의 법적 구속력 부재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한 조례」를 폐지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8호

□ 제안이유

- 문장이 길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상위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의 문장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장 명료화 및 정비(안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 상위법에 직접 근거 사항 삭제(안 제7조제3항)
- 주체 명료화(안 제8조제6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9호

□ 제안이유

- 가.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약칭으로 일원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가독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조례에 사용된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정비하여 행정구역 명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 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반복되는 용어 약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7조)
- 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 구체화(안 제6조)

의안번호 159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소외받지 않도록 (약칭)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기관 지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필요
- 학업중단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필요

나. 위탁기간 : 2026. 1. ~ 2027. 12.(2년)

다. 위탁사무 :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안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 의료적·교육적 지원을 위해 병원형 위(Wee)센터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 전문인력과 치료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함. 개인적·가정적·교육적 위기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대안교육,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필요함
- 나. 위탁기간 : 2026. 1. ~ 2027. 12.(2년)
- 다. 위탁사무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반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중복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2호

제안이유

-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갑질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28항)
-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안 제23조제2항, 안 제23조제4항, 안 제23조제10항, 안 제23조제14항, 안 제23조제19항)
- 다.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 3)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9. 15.
	의 결 일 자	2025. 9. 1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 사업목적 : 푸드테크, 바이오 기술창업, 첨단바이오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성장 견인 인프라 구축과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 ~ 2029년(5년)
- 사업내용 : 바이오첨단소재 창업 등 입주 및 기업지원 시설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구성·운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년 10월 3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 경제 · 사회 기반 강화와 더불어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야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음.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 및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의 시간 필요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제도 및 정책의 실행력 및 완성도 제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리적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 미래지향적 도약을 위한 전환점일 될 것으로 기대함.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 출 자	김동구·김만기·이수진·이병도 ·임종명·김이재·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2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후속 지원체계·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26.6.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3호	

□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도정의 행정 혁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다.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제공 기반 구축, 민간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 마. 업무의 위탁, 포상, 수당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8. 2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2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잔반 처리 비용 절감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중복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8. 2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4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나.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의무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 다.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 출 자	김만기·최형열·김희수·강동화·오현숙 ·이수진·국주영은·김이재 의원		제 출 일 자	2025. 8. 2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년 10월 3일자로 만료 될 예정이나, 한빛원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AI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정중복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8. 2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다가오는 AI·로봇 융합 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피지컬 AI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확대가 절실

###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AI 혁신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AI 혁신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범위: 피지컬 AI 관련 정책 전반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강태창·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6명)		제 출 일 자	2025. 8. 2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5호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6호

□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됨. 이에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호)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5887호

□ 제안이유

- 가. 「건축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나. 기존 조례의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조문 간 명확성 제고(현행 제22조제1항 삭제 등)
- 나. 업무 위탁기관 명칭의 명확화 (안 제23조)
- 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및 운영 체계 강화 (안 제24조)
- 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근거 신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 (안 제25조)

##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찬성의원 1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8호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수반(隨伴)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이에 공정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검토 절차와 계약심의, 계약정보공개, 점검과 시정조치 및 결과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근거, 체결 등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계약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사용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수의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계약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수의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필요시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의원(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89호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공공기관 요청에 따른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나. 일부 명칭 띄어쓰기 수정(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정식 명칭으로 수정(안 제3조제3호)

##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0호

□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가사노동자 등에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함(안 제9조)
- 라.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오현숙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석면건축물의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거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에 대해 조속히 국비를 지원하고, 단계별 철거계획을 수립·시행하라.
-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철거 전까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량 폐석면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미상정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온길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무상 통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며,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도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운영계획(안 제4조)
- 라. 무상통학권(안 제5조)
- 마. 스마트서비스(안 제6조)
- 바. 전담인력(안 제3조)
- 사. 재정·협력(안 제9조)
- 아. 평가(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3호

□ 제안이유

-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인 학생 및 교직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윤정훈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변경
- 향후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따라 추진될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0월 27일까지로 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5호

□ 제안이유

-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감전 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박용근·김정수·오현숙 ·이정린·국주영은·오은미·황 영석·정종복·강태창 의원 (찬성의원 4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1호

### □ 제안이유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사.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권요안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2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3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 나.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으로 개정 및 신설함(안 제21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6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청렴도 평가 및 표창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김정수·국주영은·권요안 의원 (찬성의원 4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4호

□ 제안이유

- 가.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그린바이오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첨단산업 지역인재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정린·임승식·김정수·오현숙·권요안·김슬지·한정수·염영선·이수진 의원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6호

□ 제안이유

-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의 의료비,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및 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마. 지원사업의 환수 및 위탁에 대한 규정(안 제7~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정린·임승식·김정수·오현숙·권요안·김슬지·한정수·염영선·이수진 의원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7호

제안이유

- 정부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 12. 21.) 발표 이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등 공적 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도내 환자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실정임
- 사적 간병 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나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임. 현재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간병인 및 간병비 정의(안 제2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안 제3조~안 제4조)
- 라. 재정지원(안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이정린·임승식·김정수·오현숙·권요안·김슬지·한정수·염영선·이수진 의원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898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다. 실태조사(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마. 생활지원수당 지급(안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김이재·최형열·전용태·윤수봉·권요안·박용근·염영선·김대중·오현숙·국주영은·김정수·이정린·황영석 의원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8. 29.
	의 결 일 자	2025. 10. 21.	심 사 결 과	보류(421회) 원안가결(422회)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422회)		
	의 결 일 자	2025. 10. 2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10.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1. 14.		공 포 번 호	제5938호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 제2조제6호) 운영자금 항목 신설 및 관련 정의·지원 근거 마련  
⇒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운영자금을 신설함
- 나. (안 제2조) 기능이 중복되는 육성자금 정의 삭제  
⇒ 시설개선자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육성자금 정의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 다. (안 제2조제4호)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추가  
⇒ 기금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포함하여 위생 우수업소 전반의 운영지원을 확대함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9. 11.
	의 결 일 자	2025. 9.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553,103,100	316,593,093
일	반 회 계	9,477,798,878	284,333,966
특	별 회 계	1,075,304,222	32,259,127
	기 타 특 별 회 계	1,075,304,222	32,259,127
	의 료 급 여 기 금	620,987,331	18,629,620
	동 부 권	36,150,000	1,084,5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787,609	203,628
	소 방	410,502,652	12,315,080
	특정자원분·특정시설 분 지역자원시설세	876,630	26,299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9. 11.
	의 결 일 자	2025. 9.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수입 증가 등의 수입 및 지출 내용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당초계획(C)	1,108,352,834 (1,089,452,834)	237,524,593 (216,311,377)	271,862,462 (264,549,246)	△34,337,869 (△48,237,869)	1,074,014,965 (1,041,214,965)	
변경계획(D)	1,108,352,834 (1,089,452,834)	257,573,536 (216,344,977)	272,147,605 (264,719,046)	△14,574,069 (△48,374,069)	1,093,778,765 (1,041,078,765)	
증 감(D-C)		20,048,943 (33,600)	285,143 (169,800)	19,763,800 (△136,200)	19,763,800 (△136,200)	

##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사무소 또는 자매·우호 도시 등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해 왔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자 발급 지연·거부로 인한 근무 공백, 자격요건 설정 및 변경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복무 관리의 어려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정한 선발 기준과 파견 전 비자 확보 등 운영상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운영 기준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정부 운영 기준에 맞추어 자체 기준을 정비하고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할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하라!
-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이재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그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하여 해당 특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영세사업자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 나. 내용인즉,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임
- 다. 여기에 더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선정 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라.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지역 기준을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대중·임승식·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5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보수는 여전히 훈시규정(訓示規定)에 머물러 지역·시설별 임금격차와 숙련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음
- 나. 동일·유사 업무에도 지역·기관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불합리한 격차가 지속되었고, 교대·야간·위기대응 등 특수근무에 대한 수당 및 인력 기준 미비로 종사자의 사기 저하가 커지고 있음
- 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미흡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라.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복지 공동체 실현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강행규정(強行規定)으로 즉시 개정하고, 표준화된 단일임금제가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승식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임.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과거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여러 기관의 이탈 시도 사례는 혁신도시 정책이 제도적 보완 없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지키고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회귀 원천 차단, 중앙정부·지방정부·이전기관이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법제화, 국가 차원의 정주 여건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 정부와 국회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즉각 개정하라.
- 정부는 관계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오은미 의원(찬성의원 17명)		제 출 일 자	2025.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며,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을 확대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공정한 배달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총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광고비·노출 조건의 투명화, 일방적 약관 변경 방지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 정부와 국회는 배달플랫폼의 ‘총수수료 상한제’ 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광고비와 노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즉시 시정하라.
- 정부는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과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와 거래조건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입점업주들의 단체 협의 권을 보장하라.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9.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존재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 무치한 행태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 주요내용

- 정부와 국회는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파면하라.

##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9.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자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분야임.
- 나. 하지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검토 등과 같은 자국 우선 정책 기조,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다. 이에 근본적인 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국내외 법안·규제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로드맵 수립과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건의하기 위함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및 돌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9.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 활동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정책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시설이 이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공간 확보 등 제약으로 인해 통합돌봄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들의 특성상 서비스 전환 역시 쉽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기존 돌봄 서비스 간 형평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정비와 운영 현실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의 역할을 반영한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 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공간·인력 등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박정규·장연국·나인권· 임승식·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4명)		제 출 일 자	2025. 9.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현재 전북 지역에는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 및 시험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나. 또한 현행 7년 실무 경력 요건은 프리랜서가 많은 업계 특성상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 다. 이에 지역 인재의 기회 확대와 미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에 실기시험장을 설치하고 대학의 미용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의 기능 인재가 평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을 설치하라!
- 정부는 이·미용업계 종사자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학 미용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 출 자	이정린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9.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역 내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부산악권을 중심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안정적·성공적 유치 지원을 위해 구성·운영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6. 6.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 당초 활동기간: 2024. 9. ~ 2025. 9. 9.
- 변경 활동기간: 2024. 9. ~ 2026. 6. 30.

##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윤수봉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9. 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43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출 석 일 시 : 2025. 10. 20.(월) 14:00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10. 27.(월) 14:00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 출석요구이유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9.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10. 10.		공 포 번 호	제5900호

□ 제안이유

-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나. 이에 변호사 등에게 입법·법률 고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재위촉 규정은 친분관계,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찬성의원16명)		제 출 일 자	2025. 9.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10. 27.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임.
- 현재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자치단체 별로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국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촉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정부와 국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에 적극 나서라.
- 나. 정부는 보훈대상에 대한 수당지급을 확대하고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하라.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명지 의원(찬성의원10명)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10. 27.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국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약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환자 3~4명이 공동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면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등에는 간병 관련 조항이 일부 존재하나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건강보험법」의 급여 항목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 다수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간병’, ‘요양’, ‘돌봄’ 등 용어가 부처별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주관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제도 간 연계성과 통합 관리가 미흡함
- 정부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국가가 책임지며,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지원 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찬성의원10명)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10. 27.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배달업종사자는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그 수와 산업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관련 안전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5년 사이 배달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건수는 무려 6배가 증가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나. 따라서 배달업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달플랫폼업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의무,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이 아니라 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법정 의무화함으로써 배달업종사자 개인은 물론 배달플랫폼업체와 국민 모두가 배달업종사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배달업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위험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하여 배달업종사자들이 교통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을 통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찬성의원8명)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사회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가 증대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및 정책 대안 제시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조직과 인력이 한정되어 급증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특히,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축소되고, 전문위원·정책지원관 실무교육 신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예산을 대폭 확대·격상하여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격상하여 독립적 예산과 조직을 갖춘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계획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실적 공개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권요안·김슬지 의원 (찬성의원11명)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인력 충원 제한으로 인해 실제 추진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내 곳곳이 여전히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농산촌과 산간지역은 모두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취약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긴급 상황 시 초기 대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공백을 초래함.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수준에서 기준인건비를 동결하여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정원 확대를 제한하고 있어 신규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이로 인해 소방력 보강계획은 현장의 절실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소방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따라서 정부는 경직된 소방기관 설치 협의 제도를 개선하고, 기준인건비 동결 정책을 해제하여 지역 현실과 현장 소방 수요에 맞춘 정원 확대와 신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소방력 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함.

##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찬성의원12명)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10. 27.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새만금 개발은 국가가 수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으로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혹한 선고나 다름없음
- 나. 새만금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멸종까지 거론될 정도의 폐해를 낳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 거점으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다. 정부는 법원이 지적한 모든 쟁점을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으로 치밀하게 보완해 사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라. 이에 전북도민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자 의무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함임

##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문승우 의장 외 39인		제 출 일 자	2025. 9.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7.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
- 나. 첨단전략산업이자 안보자산인 K-반도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다. 새만금은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장소이자 대통령이 공약한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거점으로써 성공적인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선 새만금에 좋은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라. 이에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제 출 자	각 상임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9.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8.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감사근거 및 대상

행정사무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기간 : 2025. 11. 11.(화) ~ 11. 20.(목)(10일간)

감사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필요시 현지확인)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9. 5.~2025. 9. 17.)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지	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교통	도시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16		1											15
2025년누계	56	1	4	6	2	2	1			1		3		36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16	16	16				
2025년누계	56	56	56				1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금회	16	16	15	1			
2025년누계	56	56	47	1	7	1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9. 17)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까지	소 계	<b>280</b>	<b>280</b>	<b>280</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	20	20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5	15	15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7	17	17			
	교육위원회	72	72	72			
	기 타	142	142	142			
금회	소 계	<b>16</b>	<b>16</b>	<b>16</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1	1	1			
	기 타	15	15	15			
누계	소 계	<b>296</b>	<b>296</b>	<b>296</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	20	20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5	15	15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7	17	17			
	교육위원회	73	73	73			
	기 타	157	157	157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5. 9. 5. ~ 2025. 9. 17.)

기관별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97	97		100
누계		1,065	1,065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77	77		100	
	누계	808	808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20	20		100	
	누계	258	258		100	

###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5. 9. 5. ~ 2025. 9. 17.)

기관별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98	15	29	20	19	13	-
누계		1,066	240	179	208	244	161	-	33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77	14	24	18	16	4	-	1
	누계	808	213	142	177	201	51	-	24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21	1	5	2	3	9	-	-
	누계	258	27	37	31	43	110	-	9

###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9. 17.)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2,170	2,170		
전북특별자치도	1,652	1,6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18	518		

###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9. 1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2,170	451	425	426	436	377	2	53
전북특별 자치도	1,652	397	342	375	381	117	2	38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518	54	83	51	55	260	-	15

###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5. 9. 1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949	1,082	992	951	1,098	764	4	59
전북특별 자치도	3,925	983	820	839	1,008	227	4	44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1,024	98	172	112	90	537	-	15